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21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 의 자 : 권칠승 · 허성무 · 박균택
박해철 · 김기표 · 김준형
한준호 · 신영대 · 김영환
한민수 · 강준현 · 임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5년간 피해 금액이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높은 소송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에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영업비밀 외에도 아이디어, 기술자료 등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 자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의 지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라.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마.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사.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를 권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기술침해 신고 및 분쟁의 조정·중재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 목에 따른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하는 행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제1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침해하는 행위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항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침해하는 행위

마. 「특허법」 제2조제2호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침해하는 행위

제4조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 및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송부할 수 있다.
- ⑦ 중소기업부장관은 자료를 가진 자가 제4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가진 자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해당 서면에 대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각 3회 이하의 범위에서 질문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지 여부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 중소기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이미 개시된 조사절차 및 시정권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신청인이”를 “피신고인”로, “그”를 “특허청장 및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그”로 한다.

1.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미 신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피신고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를 “침해의 금지 또는”으로 한다.

제8조의6 및 제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이행강제금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가 기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의7(사업자 등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외견상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더라도 소명의 시기 및 내용과 제출요구된 자료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소명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전혀 소명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조의3제1항의 권고 및 제3항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실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중재하기”를 “중재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정하게 판단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을 “1명과 부위원장 2명을”로, “50명”을 “6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허청의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직에”를 “공무원으로”로 한다.

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판단에 관한 사항

5. 제27조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제23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조정안의 작성 등) ①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조정부는 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절차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당사자가 당해 조정부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정부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을 “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 법에 따른 신고·조정·중재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6 및 제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 -----.
가. <u>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u>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하는 행위
나. <u>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u>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다. <u>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u>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제25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제1항제1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침해
하는 행위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항
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위반하여 침해하는
행위

마. 「특허법」 제2조제2호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기술을 같은 법 제127
조에 따라 침해하는 행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대·중소기
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의 신고 및 조사) ① ~ ③ (생
략)

④ 중소기업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⑤ (생략)

<신 설>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의 신고 및 조사)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신 설>

<신 설>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
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
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
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

결과를 송부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
를 가진 자가 제4항에 따른 제
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료
를 가진 자로 하여금 신고인에
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
도록 하고, 해당 서면에 대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각 3회 이하
의 범위에서 질문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
는 자가 중소기업자인지 여부
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
며, 그 이후 중소기업자가 아니
게 된 경우에도 이미 개시된
조사절차 및 시정권고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

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
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

1.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미 신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
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피신
고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
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피신
고인이-----
-----특허청장
및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

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침해의 금지 또는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6(이행강제금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가 기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

<신 설>

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의7(사업자 등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외견상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더라도 소명의 시기 및 내용과 제출요구된 자료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소명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전혀 소명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조의 3제1항의 권고 및 제3항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실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

-----중재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판단에 관한 사항

5. 제27조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1명과 부
위원장 2명을-----60명-----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 -----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1. (생 략)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 6. (생 략)
- ⑤ ~ ⑧ (생 략)

<신 설>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특허청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신 설>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조정안의 작성 등) ①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조정안에 이의를 붙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조정부는 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절차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당사자가 당해 조정부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
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
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②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
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
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

-----.

② 위원회는-----

-----.

③ 위원회는-----

-----.

④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등 협

<u><신 설></u> <u><신 설></u>	<u>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⑤ 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u> <u>신청한 자에게 제8조의2제1항</u> <u>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권고할</u> <u>수 있다.</u> <u>제3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 법</u> <u>에 따른 신고·조정·중재 당</u> <u>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u> <u>다. 대리인의 자격·절차 등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	--